

審 查 報 告 書

1995. 5. 30.

산 업 위 원 회

1. 審査經過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5년 5월 20일 속초시장
- 나. 회부일자 : 1995년 5월 20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95. 5. 30)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수도과장 이태천)

가. 제안이유

- 도의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지침에 따라 요금을 절수형으로 개선하므로서 용수난을 효율적으로 극복함은 물론, 시설확충과 수질개선 및 상수도 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사회 복지시설과 보훈단체 등의 상수도요금 감면기준을 제도화 하며, 요금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제도의 불합리한 점등 수도급수조례를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가정용 수도요금 조정 : 월 25톤 사용시 350원 추가부담
⇒ 현행 4,650원을 5,000원으로 조정(7.5% 인상)
- 기존 영업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
- 기존 영업용 2종은 영업용으로 명칭만 변경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 본 개정 조례안은 속초시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요금체계의 개선, 일부 급수업종의 통폐합, 이자 제한법에 의한 요금채납액 가산금 제도 개선, 비영리단체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규정 확대등 지금까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상수도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무절제하게 많이 사용하는 가정에 대한 누진율을 확대 적용하고, 또한 영업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폐합하여 형평성 논란을 해소시켰으며, 이에 따라 상수도요금이 평균 7.5% 인상되어 연간 2억여원의 요금수입 증대가 예상됨.
- 그러나 당면한 우리시의 상수도시설 확충, 기존 채무변제 능력등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요금인상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독립채산제로써의 경영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 개정안은 강원도의 "상수도요금 체제개선 계획"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또한 "속초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만 모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임으로 신중한 심사가 요구됨.

4. 質疑 및 答辯要旨

(답변자 : 수도과장 이태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가정용 수도요금 인상목적은?	○ 가정용 상수도 사용율은 60%인 반면 급수수입은 34%에 해당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공업용에 대하여 인상하지 않는 이유는? ○ 본조례의 시행시기는? 또한 홍보계획은?	○ 그러므로 가정용에 대한 절수효과를 높이기 위함. ○ 단, 20톤미만 사용하는 서민층에 대하여는 동결하였음. ○ 타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때문임. ○ '95. 7.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 반상회 및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할 계획임.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修 正 案 要 旨 : 없 음

7. 審 査 結 果 : 原 案 可 決

8. 少 數 意 見 의 要 旨 : 없 음

9. 其 他 必 要 한 事 項 : 없 음

첨 부 :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8
----------	-----

제출년월일 : 1995. 5. .

제 출 자 : 속초시장

1. 제안사유

도의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지침에 따라 요금을 절수형으로 개선 하므로써 용수난을 효율적으로 극복함은 물론, 시설확충과 수질 개선 및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사회복지시설과 보훈단체등의 상수도요금 감면기준을 제도화 하며 요금채납액에 대한 가산금제도의 불합리한점등 관련 수도급수조례를 개정. 보완 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 가정용 수도요금체계 개선 ⇒ 사용구간의 다단계화, 세분화

현 행		개 선
4개 단계	⇒	6개 단계

- | | |
|---------------------------|----------------------------------|
| - 기본요금, 11 - 30 톤 (0-10톤) | - 기본요금, 11 - 20톤, 21-30톤 (0-10톤) |
| - 31 - 50톤, 51톤 이상 | - 31- 40톤, 41 - 50톤, 51톤이상 |

- 톤당요금과 누진율 적용을 4-5인 가족의 일적정 사용량인 20톤 까지는 현행수준유지 (원가이하 공급)
- 물 과소비 가구에 대하여는 사용구간별 요금체계를 개선

○ [가정용] 수도요금 조정 (안)

구	분	0 -	11 -	21 -	31 -	41 -	51톤	비	고
		10톤	20톤	30톤	40톤	50톤	이상		
단 가 (월/톤)	현 행	150	210		230		400	평균:189원	
	조정후	150	210	280 (33%)	320 (39%)	390 (70%)	720 (80%)	평균:222원 (17.5%)	
	(인상율)	(0)	(0)	도. 37%	도. 42%	도. 70%	도. 80%	※ 23.1%	
사 용 량 (년/천톤)	현 행		2,046		380		229	4,707	
	조정후	2,052	1,496	550	231	149	229	합계	
요금수입 (년/천원)	현 행		429,660		87,400		91,600	889,346	
	조정후	280,686		154,000		58,110		1,045,756	
			314,160		73,920		164,880	합 계	

※월25톤 사용시 350원 추가부담 : 현행 4,650원 → 조정후 5,000원 (7.5%) 인상

□ 일부 급수업종의 통. 폐합, 단순화 (7종 ⇒ 6종)

○ 조정내용

· 기존 [영업1종] 과 [공공용] 을 [업무용] 으로 통합

· 기존 [영업1종] 적용업소는 [업무용] 으로 전환 (요금은 종전과같고 업종만변경)

· 기존 [공공용] 은 [업무용] 으로 전환과 동시 요금사용구간을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 누진율 적용

· 기존 [영업용 2종] 은 [영업용] 으로 명칭만 변경

(요금은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감안 종전과 같음)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조정하는 사유)

- 특별한 사유없이 공공기관, 단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부과 -
- 형평성 논란 유발, 민원발생 사례빈발
- 공공기관, 단체에서 절수운동 수범필요

※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중앙에 건의한 사항임

○ [공공용] 의 [업무용] 으로 조정 (안)

현 행 [공공용]				조정후 [업무용]			
사 용 구 간	사 용 량 (톤)	단가 (원)	요금 수입 (천원)	사 용 구 간	사 용 량 (톤)	단가 (원)	요금 수입 (천원)
기 본 (0 - 30 톤)	67,169	270	20,578	기 본 (0 - 20 톤)	60,760	355	21,570
초 과 구 간 31톤이상	407,523	450	183,385	초 21-50톤	56,535	480	27,137
				과 51-100톤	177,914	520	92,515
				구 101-300톤	120,714	570	68,807
				간 301톤이상	58,766	600	35,259
계	474,692	429	203,963	계	474,692	516	245,288

※ ① 조정후 (우측란) 사용구간 및 요금단가는 종전 영업용1종과 같음.

② 월150톤 사용시 13,900원 추가부담 : 현행 62,100원 ⇒ 조정후 76,000원 (22%인상)

○ [영업용2종] 은 ⇒ [영업용] 으로 명칭만 변경, 요금은 현행과 동일

사 용 구 간	사용량(톤)	단	가	요 금 수 입 (천원)	비	고
기 본 (0 - 30 톤)	421,047	366		188,513		
초 과 구 간	31 - 50톤	171,411	500	83,399		
	51 - 100톤	243,990	670	157,560		
	101톤이상	758,342	750	561,277		
계	1,593,890	621		990,749		

□ 요금채납액 가산금 제도개선

- 현행 납기내 요금 미납시 요금의 5% 가산금 징수는 이자 제한법에 위배됨
 - ※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 최고이자율 연2할5푼
- 5% 가산금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것이나 수용가에게 납기내 납부의 유인책이 되지못함
-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장기및 상습채납자에게 악용의 소지도 있음
- 이자 제한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가산금 조정
 - 채납액의 2%로 하향조정 (년 24%)
 - 완납시까지 매월 2%씩 증가산금 징수
- 이자제한법 위배로인한 분쟁소지를 없애고 고질채납자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도록함.

□ 수도요금 감면규정 명문화

-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등의 수도요금 감면규정화

3. 기대효과

가. 절수를 통한 용수난 극복에 기여

- 연간 259,913톤 절수예상
 - [가정용] 수도요율조정 (17.5%)에 따른 절수 : 230,672톤
 - [공공용]의 업무용 전환및 요율조정 (20%)에 따른 절수 : 29,241톤

※ 수도요금 1% 인상시 0.28% 절수효과 나타남('94환경부자료)

나. 응익. 응능원칙에 의한 수익자 부담의 형평성 제고

- 누진율 조정에 따른 추가부담대상은 전가정용 수용가의 24%에 국한된 물다량 사용가구에 한정
 - 월 20톤이하 사용가구 76%, ※가구별 평균사용량 월20톤
- 절수를 통한 시민요금 부담경감

다. 상수도시설 확충. 현대화 및 경영개선에 기여

- 연간 197,735천원의 요금수입증대 예상
 - (가정용 156,410천원, 공공용 41,325천원)

· 업종별 예상급수 수익전망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가 정 용	영업1종 (업무용)	영업2종 (영업용)	공공용 (업무용)	육탕1종	육탕2종	기 타
현 행	2,635,055	889,346	399,290	990,749	203,963	148,932	2,775	
개 섣 후	2,832,790	1,045,756	399,290	990,749	245,288	148,932	2,775	
증 감	증 197,735	156,410	-	-	41,325	-	-	
인상율	7.5%	17.5%	-	-	20%	-	-	

※ 수도요금 7.5% 인상시 소비자 물가에는 0.037%의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됨

- 수도요금 10 % 인상시 ' ' 0.049%의 영향이 미침 (재경원 자료)

라. 가산금율을 조정하여 이자제한법 위배로 인한 분쟁소지를 없애고 고질채납자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도록 함

[따로붙임]

1. 수도요금 개선후의 업종별 요금표
2. 업종별 요율표 (신. 구대비)
3. 개정후 업종구분표
4. 현행업종구분표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95. 4 . 8 . - 4 . 28 (21일간)
- 시정조정 위원회 심의 : '95. 5 . 18 .
- 물가대책심의 위원회 심의 : '95. 5. 24.
- 시의회 상정 : '95. 5. .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요금) 제1항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구분에 따른다.

제33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한다.

제33조중 제2항을 제4항으로하고 제2항및 제3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② 체납된 수도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때마다 체납된 수도사용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37조중 제1항을 다음과같이 한다.

①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노인회등의 급수업종은 가정용으로하되 매월 수도요금중 기본 요금에 한하여 전액감면 할수있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3조(가산금등) ①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때에는 납기를 경과한때로부터 체납액 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가산금등) ①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때에는 납기를 경과한때로부터 체납액 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체납된 수도사용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때마다 체납된 수도사용 요금의 100분 의 2 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제1항에 규정 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③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생략)			
제37조(요금등의 감면)	제37조(요금등의 감면)		
①생활보호 대상자중 거택보호가구는 기본 요금에 한하여 전액감면 할수있다	①생활보호 대상자중 거택보호가구와 사회 복지시설, 보훈단체, 노인회등의 급수업종 은 가정용으로 하되 매월 수도사용 요금중 기본요금에 한하여 전액감면 할수있다.		

수도요금체계 개선후의 업종별 요금표

(별표1)

(단위 : 톤당, 원)

업종별	기본요금		초과요금		톤당 평균요금	비고
	사용량	요금	사용량	요금		
가정용	0 - 10	1,500	11 - 20	210	222	
			21 - 30	280		
			31 - 40	320		
			41 - 50	390		
			51 이상	720		
업무용	0 - 20	7,100	21 - 50	480	516	
			51 - 100	520		
			101 - 300	570		
			301 이상	600		
영업용	0 - 30	11,000	31 - 50	500	609	
			51 - 100	670		
			101 이상	750		
곡탕 1종	0 - 200	66,400	201 - 300	460	570	
			301 - 500	510		
			501 이상	700		
곡탕 2종	0 - 200	90,000	201 - 300	770	1,416	
			301 - 500	1,050		
			501 이상	1,300		
전용공업용	본당			350	350	

업종별 요율표

현행			개정			비고
업종별	단 계 별	금 액	업종별	단 계 별	금 액	평균 7.5% 인상
가정용	0 - 10 톤	1,500	가정용	0 - 10 톤	1,500	평균 17.5% 인상
	11 - 30 톤	210		11 - 20 톤	210	
	31 - 50 톤	230		21 - 30 톤	280	
	51 톤 이 상	400		31 - 40 톤	320	
				41 - 50 톤	390	
				51 톤 이 상	720	
영업1종	0 - 20 톤	7,100	영업1종	0 - 20 톤	7,100	평균 20 % 인상 ※ 공공용에만 적용
	21 - 50 톤	480		21 - 50 톤	480	
	51 - 100 톤	520		51 - 100 톤	520	
	101 - 300 톤	570		101 - 300 톤	570	
	301 톤 이 상	600		301 톤 이 상	600	
공공용	0 - 30 톤	8,100	공공용			
	31 톤 이 상	450				
영업2종	0 - 30 톤	11,000	영업2종	0 - 30 톤	11,000	현행과 동일
	31 - 50 톤	500		31 - 50 톤	500	
	51 - 100 톤	670		51 - 100 톤	670	
	101 톤 이 상	750		101 톤 이 상	750	
육탕1종	0 - 200 톤	66,400	육탕1종	0 - 200 톤	66,400	현행과 동일
	201 - 300 톤	460		201 - 300 톤	460	
	301 - 500 톤	510		301 - 500 톤	510	
	501 톤 이 상	700		501 톤 이 상	700	
육탕2종	0 - 200 톤	90,000	육탕2종	0 - 200 톤	90,000	현행과 동일
	201 - 300 톤	770		201 - 300 톤	770	
	301 - 500 톤	1,050		301 - 500 톤	1,050	
	501 톤 이 상	1,300		501 톤 이 상	1,300	
전공업용	톤 당	350	전공업용	톤 당	350	현행과 동일

개정후 업종 구분표

구 분	대 상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것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점등의 소매업, 10㎡미만의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등
업무용	· 관공서, 학교, 병원, 교회, 사찰, 방송국, 신문사, 국영기업체, 정당, 공공도서관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은 업소 · 사설소화전
영업용	(1) 식품접객업, (2) 공연장, (3) 숙박업(여인숙제외), (4) 유기장, 노래방, (5) 백화점, 도매 쉼타, 대규모소매점, (6) 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및 관광업, (7) 음식점, (8) 사설학원, (9) 사진현상소, (10) 양조장, (11)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12)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제외), (13) 단시급수를 목적으로 임시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받아 시공중인건물:입주전까지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 요율적용) (14) 별도급수전에 의한 선박용급수, (15) 수도관 파손에의한 누수, (16) 제빙, 냉동, 내장업 (17)블럭제조업, (18)꽃집(원예포함), (19) 창고업, (20) 수족관, (21)골프장, (22)제재소, (23)야구연습장, (24)금융기관, (25)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업체
욕탕 1. 중	대중탕, 한증탕, 비영업 풀장
욕탕 2. 중	사우나탕, 터키탕, 가족탕, 독탕, 영업용 풀장, 안마시술소
전용 공업용	공업단지등의 공업지역에 원수로서 공급하는 수도전

현행 업종 구분표

구분	대	상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것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점등의 소매업, 10㎡미만의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등	
영업 1 종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은 업소 · 사설소화전	
영업 2 종	(1) 식품접객업, (2) 공연장, (3) 숙박업(여인숙제외), (4) 유기장, 노래방, (5) 백화점, 도매점, 대규모소매점, (6) 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및 관광업, (7) 음식점, (8) 사설학원, (9) 사진현상소, (10) 양조장, (11)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12)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제외), (13) 단시급수를 목적으로 임시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받아 시공중인건물:입주전까지 온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 요율적용), (14) 별도급수전에 의한 선박용급수, (15) 수도관 파손에의한 누수, (16) 제빙, 냉동, 내장업, (17) 불력제조업, (18) 꽃집(원예포함), (19) 창고업, (20) 수족관, (21) 골프장, (22) 제재소, (23) 야구연습장, (24) 금융기관, (2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업체	
요탕 : 종	대중탕, 한증탕, 비영업 풀장	
요탕 : 종	사우나탕, 터키탕, 가족탕, 족탕, 영업용 풀장, 안마사술소	
공공용	관공서, 학교, 병원, 교회, 사찰, 방송국, 신문사, 국영기업체, 정당, 공공도서관	
전용 공업용	공업단지등의 공업지역에 원수로서 공급하는 수도전	

참 고 자 료

□ 외국의 수도요금

(단위 : 원/톤)

국가별 (도시별)	수 도 요 금	비 고
미 국 (워 싱 턴)	2,310	
스위스 (쥬 리 히)	1,619	
일 본 (도쿄)	1,422	
프랑스 (파리)	1,315	
스웨덴	1,250	
호 주 (시드니)	924	
독 일 (본)	724	
영 국 (런던)	596	
덴마크 (코펜하겐)	374	

※ 『상수도』 건설부1993, 1994환경부자료

□ 타물가·공공요금과 수도요금

품 목	다방커피	우 유	콜 라 생 수	맥 수	목 욕 료	
가격규격 (원)	1,500 (한잔)	1,080 (1,000ml)	1,050 (1.5 l)	4,000 (18 l)	1,300 (500ml)	2,000 (1인)
품 목	전화요금	대 중 교 통 비	좌석버스	담 배	이 발 료	전기요금
가격규격 (원)	21,100 (월)	30,500 (월)	600 (1인)	1,000 (월) 30,000원)	10,000 (1회)	12,590 (월)

※ ① 속초시 가정의 월평균 수도요금 부담액은 3,600원(20톤)임

②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중 수도료비중 : 한국0.7%, 일본1.1%, 영국1.2%

미국0.6%, 대만1.9%